

대구예술대학교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2.08.01. 교무위원회)

제1조 (목적) 이규정은 학칙 제26조에 따라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한다)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대학(이하 “교류대학” 이라 한다)과의 학생 교류와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교류대학과의 교류학생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학생, 자비유학생, 3+1유학생이 있다.

① “교환학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또는 교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상호교류대학에서 수학하여 우리 대학교 및 교류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을 말한다.

② “자비유학생” 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류대학에는 수학에 준하는 자비부담을 하여 수학한 후, 우리 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을 말한다.

③ “3+1유학생” 이라 함은 재학 중 1년에 한하여 우리 대학교에 등록을 한 후, 교류대학에서 수학한 후, 우리 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을 말한다. 단, 우리 대학교 및 교류대학의 등록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따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에 규정한 교환학생, 자비유학생, 3+1유학생 등 교류수학하는 학생(이하 “교류학생”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학) 지원대학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한다.

제5조 (지원자격) 교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다.

① 교환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② 3+1유학생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한한다. 단 휴학생은 제외한다.

③ 교환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재학기간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④ 해당 유학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⑥ 교환학생인 경우 과거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유학시기) ① 교류대학에 지원할 해당전공 및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전 소정기간내 소정의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전공주임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3+1유학생의 유학 시기는 매년 담당부서와 해당 전공이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제7조 (의무) ①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우리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학기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대학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교류대학에서 발생하는 등록금 이외의 제반 경비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지원서류) 지원자는 아래서류를 해당 전공주임에게 제출하고 해당전공주임은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①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②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1부
- ③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 추천서
- ④ 교류학생 과목 이수 계획서

제9조 (추천 및 선발) 교류학생은 해당 전공주임의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

제10조 (교과과정 이수) 우리 대학교 소속 전공에 관련된 분야의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에 우리 대학교 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해당 전공주임에게 제출, 승인 후 우리 대학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해당 전공주임에게 수강신청정정원을 제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학기간) ① 수학기간은 총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3+1유학생의 경우는 1년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수학기간 중에는 휴학 할 수 없다.

제13조 (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 학점인정은 연간 38학점 범위내, 한학기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성적평가는 대구예술대학교 학칙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며, 교류대학 성적환산표의 대비표에 따라 인정받은 성적 그대로를 인정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되면 교류대학의 장이 증명하는 성적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인정과목은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하며, 우리 대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전공 교육과정과 교류대학의 교육과정의 대비표에 따라 인정한다. 단 교육과정이 상이하어 대비표를 만들 수 없을 경우 교류대학의 이수 교과목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제14조 (학생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처리한다.

②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제15조 (장학생선발) 교류학생은 유학 당해학기를 대상으로 한 장학생 선발에서는 제외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학부운영) 학부(예·체능학부제외)로 입학한 학생 일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전공주임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